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81

발의연월일: 2022. 9. 28.

발 의 자 : 윤준병 • 양정숙 • 민형배

한병도 • 김성환 • 김정호

안규백 · 김수흥 · 최종윤

김성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22년 6월, 제주경마장에서는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말이 출전하지 않고 출전명단에 없던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사고이후 출전하지 않은 말에 투표한 고객들은 구매금을 반환받았지만, 애초 명단에 없었던 말의 출전으로 인해 경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마권구매고객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음.

이에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이미 지급한 환금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 이외의 말이 출전한 경우
- ① 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 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 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 이외의 말이 출전
	한 경우
<u>2.</u> (생 략)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
	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
	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
	향을 주지 아니한다.